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이 자료는 '14.12.22일(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12.22일)
논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

2014. 12.

관계부처 합동

순서

1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1.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2
- 지역연금 개혁 3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경쟁요소 강화 4
-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 추진 5
-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6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7
- 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 방식 도입 9
-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도입 10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상업지역의 건폐율 완화 12
-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13

2. 금융 역동성 제고

-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14
- 종합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15
-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16
-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17
-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 18
- 사모펀드 규제 개선 19
-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확대 20
-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 21

3.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 점수이민제 확대 및 취업비자점수제 도입 검토	22
· 우수인재 · 투자자 · 유학생 부모 동반거주 허용 및 유학생 국내정주 유도	26
·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사업장 사업주 부담금 부과 검토	27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동포 포용 · 활용정책 추진	28
·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29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30
·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31

4.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32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추진	35
· 조기취업자 · 경력자 · 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36
· 일학습병행제 확대 및 도제특구 지정	37
· 자유학기제 확산	38
· 전문대 기능회복	40
· 사이버대학 질 제고	42

2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1. 확장적 거시정책

· 재정 조기집행 추진	46
--------------------	----

2. 소비 여건 개선

·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47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48
·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49
· 행복기숙사 운영비 절감	50
·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시 추진 및 학원 옥외가격 표시 확산	51
·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53
·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54
· 공영TV홈쇼핑 채널 신설	55
·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56
·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기반 확대	57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 확대	58

3. 투자 의욕 고취

· 정부 R&D 과제선정시 Bottom-up 방식 확대	59
·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60
·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61
·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62
· 배출권 과세기준 정비	63
·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64
· 지역별 대학·출연연·혁신지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65
·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67
·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및 공공 지식재산 활용 지원	68
·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애로해소	69
·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70

- 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 71
- 임금채불 해소 72
-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 · 현금지원제도 개선 73
- U턴기업 인센티브 확대 74
- FTA 조기비준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75
- 온라인을 통한 역직구 촉진 76
- 신흥국 경험 로드맵 마련 및 EDCF 활용도 제고 77
- 중소 · 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78
- 수출통관 인허가관련 절차 규제 재정비 79
-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추가 대책 수립 80
- KIC 자산위탁 기관 확대 81
- 국가 · 공공기관 발주시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 조정 82
- 유망서비스산업 글로벌화 방안 마련 83
-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 84
-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85
-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86

4. 임대시장 활성화

-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공급 허용 87
-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인프라 구축 88
- 리츠 상장요건 · 출자한도 개선 89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 ICL 최소의무 상환비율 차등 적용 91

2.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 산업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92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93
- 과세특례 적용 자산의 적격 포괄양도 요건 완화 94
-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 95

3. 자본 유출입 대응

- 신외환전상망 구축 96
-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97
- 외환건전성부담금 개편 98
- 선물환포지션 한도조정 및 장기 채권자금 유인 강화 99

- GTI를 통한 남북경협 기반 조성 101

1. 구조개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① 과제 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5억원→1억원)

* ('04신설) 2년 경과10억원 이상 → ('10년) 2년 경과7억원 이상 → ('12년) 1년 경과5억원 이상

② 주요 내용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시 은닉재산 신고 유도효과 등 체납 징수액 제고 효과 예상
- 다만,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중인 인원 17,520명('04~'14년 누계, '14년 2,398명 신규자 포함)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명단공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세법개정안 발표('15.8월)

직역연금 개혁

① 과제 내용

-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②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연금수지 적자 급증 →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기금 지속가능성 보장 곤란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선방안 마련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 2. 25)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실무지원하고,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안 마련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강화(1월)
- (군인·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이후 추가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군인(10월)·사학연금(6월)의 개혁안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및 경쟁요소 강화

1] 과제 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고, 경쟁요소 강화
*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성과 비교·평가 강화방안 마련 등

2]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기금이 국내경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 필요

연도	2006년말	2009년말	2013년말
기금규모(조원)	189.1	277.3	426.4
GDP 대비 비중(%)	20.8	26.0	29.9
주식시장내 비중(%)	2.7	3.7	6.4

- (주요내용) 기금운용체계를 합리화·선진화하고, 위탁운용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 강화 등 추진
 -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조직 재편 등 기금운용체계의 전반적인 구성·운영방식 재설계
 - (경쟁요소)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등에 반영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3월), 정부 검토의견* 국회 제출(4월)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재원의원안, 김성주의원안 등) 국회 계류중
- (경쟁요소 강화)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개정(6월)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 추진

① 과제 내용

-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16년말)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 추진
 - *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지불제도(예: 요양병원 등) 개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② 추진배경·주요 내용

- (추진배경) 건강보험 재정지원* 규정이 '16년말 만료되고, 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
 -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부터,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구조
- 또한, 고령화·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증가하는 등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재점검하고,
 - 부과체계¹⁾·지불구조 합리적 개편²⁾,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³⁾ 통해 미시적 지출효율화 도모
 - 1)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확대 및 소득외 부과 요소 조정 등
 - 2)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 3)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5개) 등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15년~)
-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보고를 토대로 정부개편안 마련('15년 上)
-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협의체 발족하고('15년 初), 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시행('15년 末)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15년~)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① 과제 내용

- 현행 민간투자법에 미포함된 시설 중 수요가 있고 시급한 시설 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
 - * 마을회관·마을도서관·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추진 배경

- 현재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민간투자를 통한 보완 필요
 - * 최근 3년간 공공청사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액
(‘13 요구) 13,179억원 → (‘13 예산) 8,718억원(요구대비 66.2%)
(‘14 요구) 14,292억원 → (‘14 예산) 8,649억원(요구대비 60.5%)
(‘15 요구) 12,703억원 → (‘15 예산) 8,963억원(요구대비 70.5%)
- 특히, 세무서·교정시설 등은 상당수가 노후·협소하여 안전문제 우려와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15.1~2월 : 대상시설 확대 관련 민간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시설은 입법화 추진
- ‘15.3~6월 : 법 개정안 마련 후 국회 협의(제출)

1] 과제 내용

- 현행 절차가 길고 복잡하여 사업추진에 장애 →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

* (현황) 사업제안~실시협약 체결까지 도로 사업은 약 45개월, 철도 사업은 약 44개월 소요

2] 주요 내용

- '경쟁적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도입 등을 통해 민자 절차(제안~실시협약 체결)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1/3 정도 단축

*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신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참여자들과 협의(Dialogue) 절차를 거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평가하는 입찰제도의 한 종류

- 이와 함께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전문기관의 Non-stop service 제공*을 통해 주무관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한편, 제출 서류 간소화**도 추진

* (현재) 사업 각 단계별(RFP, 협약체결 등)로 전문기관은 최종검토만을 담당
→ (개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전문기관이 주무관청의 업무수행을 지원

** (현재) 기본설계 수준의 제안서 제출

→ (개선) 기본설계보다 한 단계 낮은 기본계획 수준의 제안서 제출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후, 201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표할 예정

*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 거칠 예정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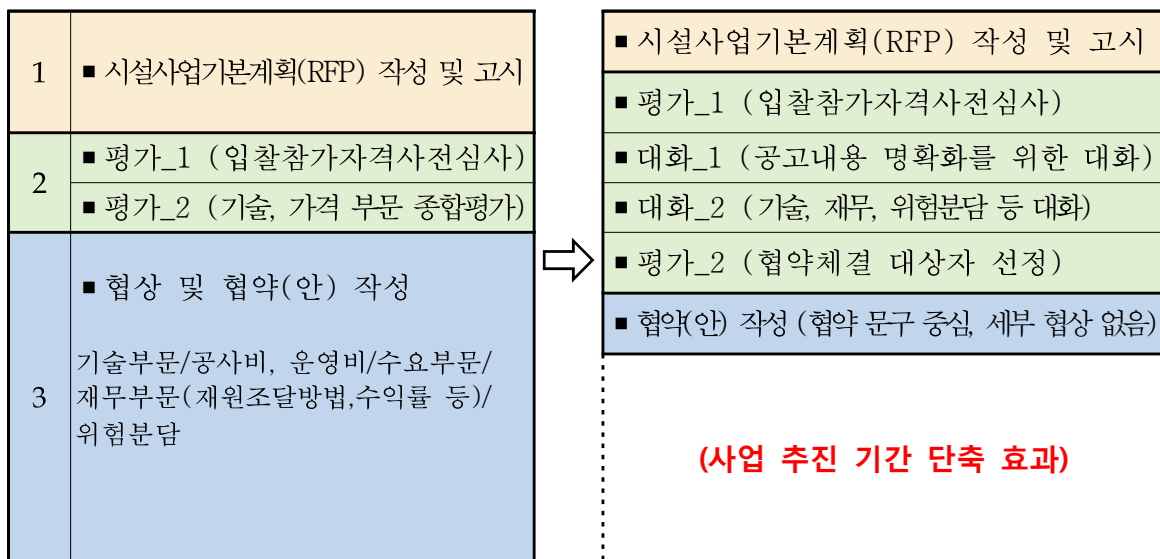
경쟁적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① “경쟁적 협의” 절차란, 입찰 시작 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발주청(주무관청)과 복수의 입찰자들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

- 유럽(EU)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달절차로써 사업 내용이 복잡하고 민간의 창의를 유도할 수 있는 PPP사업에 주로 적용
 - 발주청은 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기술적 요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입찰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 발주청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입찰자들과 대화 지속
 - 모든 입찰자들로부터 발주청이 원하는 대안이 제시된 경우 발주청은 대화절차를 종료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② 다만, 경쟁적 협의절차를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

- 현행 절차 중 ‘평가’ 단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식 검토중
 - < 현 행 >
 - < 개 선 >





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 방식 도입

① 과제 내용

- 청년창업펀드(재정 700, 민자 300억원)에 GAP 펀드방식* 도입으로 민자를 확대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

* 재정과 민간 매칭펀드 조성시 재정의 우선손실충당, 민간 우선 수익 배분

** 성과평가를 거쳐 창업 초기·벤처 기업과 SOC 투자 등으로 확산

② 추진배경

- 現 재정여건 감안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자금 유치 확대로, 투자 활성화 효과 극대화 필요
- 특히 고위험이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청년창업펀드 투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위험분담으로 민간투자 확대 필요

* 벤처활성화 대책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위험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 투자비중은 낮은 수준

- ▶ VC신규투자 규모(천억원): ('03)6.3 ('05)7.6 ('10)10.9 (11)12.6 (12)12.3 (13)13.8
신규투자 중 창업 초기 비중(%): 39.0 26.0 29.3 29.5 30.0 26.7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GAP 펀드 방식이 적용된 청년창업펀드 조성 계획수립('15.1월)
-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조성 추진('15.上)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도입

① 과제 내용

-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하여 손익공유형 투자 방식(가칭 BOA방식: Build-Operate-Adjust)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② 주요 내용

- 민자사업의 수요리스크를 재정에서 일부 분담하고, 수입>비용일 경우 초과수익은 공유
 - (수요리스크)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시행자의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시 재정 지원하되, 민간투자자도 일정 손실 감수
 - * (최소사업운영비.예) 총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 30%에 대한 이자, 관리운영비 → 총투자비 30%에 대한 원금 상환은 제외, 민간도 일정부분 수요위험 분담
 - (초과수익 공유) 초과수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최소사업운영비에 미포함된 투자비 상환에 충당, 남는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 공유
- 이를 통해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예:항만, 철도, 환경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됨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후, 2015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표할 예정
- *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 거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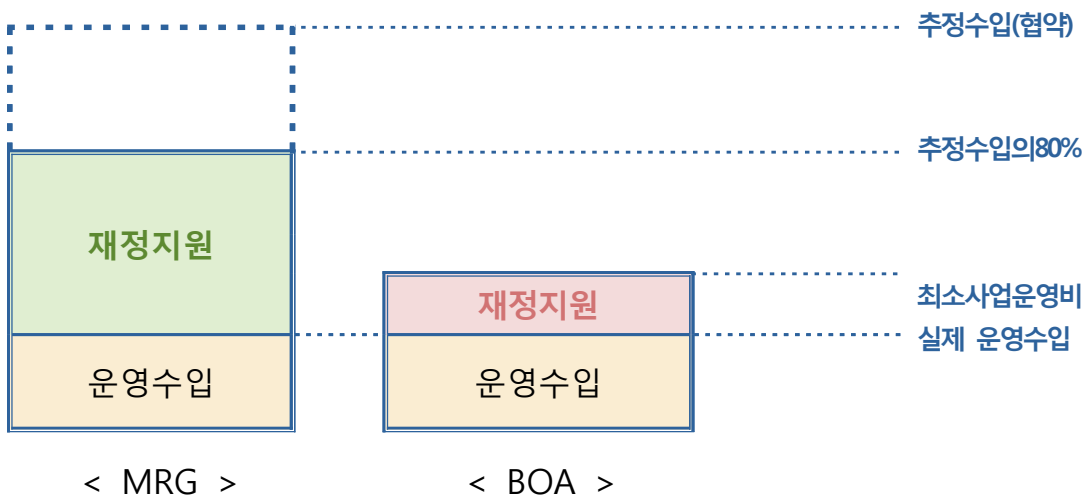
참 고

기존 MRG방식과 (가칭)BOA방식 비교

□ MRG 및 BOA 개요

	MRG	BOA
보장목적	사업자 요구 수익률 보장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 지원
보장대상	예측 수요에 따른 추정수입	최소사업운영비(투자비) ① 총민간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비율은 예시) ② 총민간투자비 30%에 대한 이자 ③ 관리운영비용
보장범위	실제수입이 추정수입에 미달시, 추정수입의 일정 비율(약 80~90%)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재정지원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 시 그 차액을 재정지원 * 초과수익 발생시에는 주무관청 (국가·지자체)·투자자 공유
사용료수준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정부가 통제 가능
사업시행자 Risk	MRG가 보장되므로 실제 손실 위험이 없음	실제수요가 적은 경우 총민간 투자비 30% 원금손실 위험

□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 BOA는 일부(총민간투자금의 70%에 대한 원리금 및 30%에 대한 이자)만을 보장, 민간투자자도 실제 수요에 따라 손실을 보게 함

① 과제 내용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

② 주요 내용

- 국토계획법 상 건폐율 상한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여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의 2 β 수준에 불과
 - * 중심상업지역: 국토계획법 상한(90%), 서울시 조례(60%)
-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 수립시 원용할 지침 필요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건폐율을 기존 도시계획 조례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 마련
 -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등의 복합 개발을 통해 경제기반을 재구축하고 고용 등 창출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15.6)
 - * 노후 도심공간의 민간투자 사업 등의 사업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경제기반의 재구축 지원 가능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① 과제 내용

-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②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경과)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13.12.27, 경제관계장관회의)

- '14년~'15년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공사에 도입

* 14년 시범사업: 제1차(6월, LH 1건), 제2차(10월, LH 등 4개 공공기관 17건)

- (주요내용)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공사수행능력: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 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

- 가격: 예정가격,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

- 사회적 책임: 건설분야 고용, 공정거래 및 건설안전 실적 등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추가 시범사업: '15.2월~9월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5.7월~11월
- 계약예규 제정: '15.10월~12월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① 증권·보험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 증권·보험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추진

② 주요 내용

- 증권·보험사는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증권·개인고객 제공)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증권)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 따라 개인고객에 한하여 자금이체업무를 허용*

*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증권사의 개인고객에 한하여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함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규정

- (보험)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10.2월)가 있었으나,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 폐기

→ 자금이체업무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협의체 구성·운영)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운영
- (관련 규정 개정)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원장·전무, 한은 1인, 시중은행 6인, 지방은행 1인으로 구성) 승인사항

① 과제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IB기능 강화

② 주요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 신생기업 및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총 최대 200%)
-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 확대
 -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권 이외의 투자 (commodity 등)'까지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시행시기를 결정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1] 과제 내용

- 국민·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의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

*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태 →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 가능

2]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국민과 기업의 송금 편의를 제고하고, 최근 IT·금융이 결합(FinTec산업)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를 통한 물품대금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PG사의 외국환업무(지급·결제 등) 허용을 검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대가정산의 대행·매개를 영위(전자금융거래법)

- (송금업) 경쟁을 통한 송금수수료 절감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송금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 일본은 금융청 등록을 한 송금업자의 송금(건당 100만엔)을 허용(‘10.4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시행)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허용 요건, 부작용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4분기 中 구체적 추진방안 확정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① 과제 내용

-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 헤지펀드·PEF 규제 완화, 독립판매채널·복합점포 활성화 등

② 추진배경·주요 내용·세부 실천방안

- 현장 중심으로 추가 규제개선 요구가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효과가 높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방안 마련

< 주요 검토방향 >

- 기존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 규제개혁 과제도 현장 반응을 점검하여 보완 필요사항 검토
- 이미 제기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중장기검토과제)도 경제·산업 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전체적인 정부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사항은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업계·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보아가며 제2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15.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추어 법령규제 및 숨은규제 정비 완료·평가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

① 과제 내용

-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제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

②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배경>

- '99.4월 「외국환거래법」(종전 외국환관리법의 대체)의 시행 이후 외환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 기재부 고시(외국환거래규정)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규정이 복잡·난해
 - * 규제완화에 따라 규정이 오히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예: 제3지급 신고예외의 경우 25호까지 열거)

<추진방향>

- 고시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시의성과 규범성간 균형을 유지
- 사전신고 대상 중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사후신고로 변경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 사항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체계를 단순화하여 이해의 편의 제고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기존 법령체계의 전면 개편인 만큼 '17년 시행을 목표
- 연구용역, TF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15년중 개선방안 마련('16년 상반기 中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사모펀드 규제 개선

① 과제 내용

-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운용 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② 세부 실천방안

① 사모펀드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 마련(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제출, '14.9월)

- (현행) 공모펀드 적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율
⇒ (개선)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제반사항 규정

②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진입)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
-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현재) 일반사모펀드 : 사전등록 // 헤지펀드·PEF : 사후 보고

- (운용) 일반 사모펀드와 PEF의 운용 대상을 대폭 확대

* 일반사모펀드 :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허용 등

* PEF :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 자산 30%내 증권투자 허용 등

③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최소투자 5억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 허용*

* 일반투자자 투자수요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흡수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확대

① 과제 내용

- 기술신용 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적용범위 확대
 - * 산·기은 기술신용대출펀드 확대(1천억원→3,250억원), 벤처기업 확인 기술성 평가에 준용(중기청), 성장사다리펀드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3,000억원) 등

② 주요 내용

-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에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산·기은의 '기술신용대출펀드' 확대(14년 1,000→15년 3,250억원)
 - * TCB(Tech Credit Bureau):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가중결합하여 최종 기술 신용등급 산출·제공(현재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3개사 존재)
 - TCB 평가기반 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 * TCB 대출실적: ('14.7월말) 486건, 0.2조원 → (11월말) 9,921건, 5.9조원
- 기술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타 정부사업과도 연계
 -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LP 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 현행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벤처확인'의 요건 중 기술성 평가시 TCB 기술평가 결과를 준용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기술신용대출펀드' 한도를 확대('15.1월)하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설립('15.3월) 후 순차적으로 출자 증액 및 투자 실시
- 「벤처기업 확인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15년중)

1] 과제 내용

-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독자 신용등급제도 시행,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

* 분리과세 혜택 일몰 연장('15년말), 편입비중에 따라 공모주 우선 배정

** 적격기관투자자 대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상호금융사까지 확대

2] 추진 방안

-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회사채시장 양극화 현상 장기화에 대응하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연장('14년말→'15년말)

-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다른 하이일드펀드보다 공모주 배정 우선권 부여

-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QIB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하여 비우량채 수요기반 확대

*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인 비상장 중소기업이 적격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완화된 요건(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 및 유동화증권

**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개인금융자산가, 서민금융기관을 제외한 은행·보험·증권사, 연기금 및 벤처캐피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독자신용등급제도 시행) 계열그룹 등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과 병기하는 방안 추진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15.3월)
- '15년 QIB제도 개선방안 마련 ('15년 상반기)
-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15년 상반기)

점수이민제 확대 및 취업비자점수제 도입 검토

① 과제 내용

- ①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이 1년 체류시 영주 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
- ②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에 대해 중장기 도입 검토

② 주요 내용

- ① 박사학위 취득자,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해외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점수평가 시 우대하여 영주자격 부여
 - 탁월한 해외우수인재들이 최고등급의 점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배점 등 조정
 - 점수이민제* 평가점수가 최고등급(120점 중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영주(F-5)자격 부여*

*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E1~E7), 유학(D-2)·취재(D-5)·구직(D-10) 자격으로 1년이상 체류자 중 연령·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 고려, 고득점자(80점이상)에는 1년 체류시에도 거주 자격(F2) 부여 중('08년 도입)('14.9월 기준, 1,330명이 점수이민제를 통해 F2 취득)
- ② 점수이민제 성공적 정착 시 취업비자점수제 중장기 도입 검토
 - 비자체계의 예측성·사용자 친화성을 강화해 '취업→거주→영주' 경로를 구축해 우수인재의 국내 정주를 지원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점수이민제 확대방안 마련('15. 3분기)
- 영주(F-5)자격자에 대한 사증·체류지침 개정('15. 3분기)

참고 1

외국인 체류현황

□ 외국인 체류 현황

○ '14.10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

- 이 중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은 49만명이며(E-9 21, H-2 28), 전문인력은 4만명, 불법체류자는 20만명 수준

총 외국인(1,779,985)									
외국인력(749,424)								유학생 (D-2)	기타
전문 인력 (E-1~ E-7)	비전문 인력 (488,801)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16,482)					
				단기 취업 (C-4)	기술 연수 (D-3)	기업 투자 연수 (D-8)	선원 취업 (E-10)		
44,081	E-9 (211,242)	H-2 (277,559)	200,060	534	1,408	5,560	8,980	62,829	967,732

□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현황

○ 비전문인력은 15개 송출국에서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 (E-9) 21만명과 중국 등 방문취업 동포(H-2) 28만명으로 구성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10월
총 계	362,460	454,431	461,203	460,208	488,900	409,617	425,552	488,801
일반(E-9)	134,012	156,429	158,198	177,546	189,190	176,277	191,637	211,242
동포(H-2)	228,448	298,002	303,005	282,662	299,710	233,340	233,915	277,559

○ (업종별) 일반 외국인력은 주로 제조업(83.7%), 동포는 제조업(57.8%), 서비스업(24.4%), 건설업(13.9%) 등에 취업

○ (국적별) 일반 외국인은 베트남(15.5%), 캄보디아(13.2%), 인도네시아(12.9%) 순으로 많으며, 동포는 중국(94.7%), CIS국가 등(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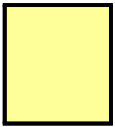
참고 2

비자제도 개요

- 현행 비자체계는 발급목적에 따라 대분류 8종, 소분류 31종으로 구분되며 유사한 성격의 활동끼리 범주화하여 관리

비자구분	발급 대상자	체류인원 ('13년,명)
비 취 업	A계열 <외교·공무 등 : A-1~A-3> · 외교관, 외국정부의 공무원, 외교적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는 자 등	2,619
	B계열 <무비자입국 : B-1~B-2> · 비자면제협정 또는 특정 비자면제 국가 국민으로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려는 자	135,798
	C계열 <취업·영리목적 외의 방문 : C-1~C-4> · 친지방문, 관광, 견학, 회의참가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려는 자	132,438
	D계열 <유학·종교·기업투자 등 : D-1~D-10> · 유학, 문화예술공연, 언론취재, 종교활동, 파견 근무, 기업투자 목적 등으로 장기 체류하려는 자	109,357
취 업	E계열 <전문직업 등 : E-1~E-10> · 전문, 예체능, 비전문 장기 취업목적 입국자	308,564
	F계열 <거주·영주 등 : F-1~F-5> · 친척 방문자, 가족동거, 국민의 배우자, 영주 자격 취득자 등	573,912
	H계열 <관광취업·방문취업 등 : H-1~H-2> · 워킹홀리데이, 방문취업제도에 따른 취업목적 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241,728
기타	G계열 <인도적 고려사유 존재 등 : G-1>	71,618

- (배경) 해외 우수인재들의 정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도입
 - * 영국, 호주, 캐나다 등도 점수이민제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적용대상) 전문인력(E-1~E-7) 및 유학(D-2), 취재(D-5), 구직(D-10) 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학력·소득 등 항목별 배정에 따라 일정점수(120점 중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전문인력*
 - *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동일한 혜택 부여
 - 공통평가항목(90점) : 학력 35점, 연령 25점, 한국어능력 20점, 소득 10점
 - 가점항목(3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10점, 소득세 납세실적 5점, 한국유학경험 5점, 사회봉사활동 5점, 해외전문경력 5점
 - 감점항목(5점) : 신청인 및 동반자 등의 범법사항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 부모 동반거주 허용 및 유학생 국내정주 유도

① 과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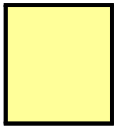
- ①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 허용
- ②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유도를 위해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 추진

② 주요 내용

- ① 국내 소득이 GNI 2배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 및 투자자, 이공계 석·박사과정 유학생 중 성적우수자로서 국내 체류경비를 입증하는 사람에 대해 부모동반 허용
- ② 인력부족 업종에서 외국인유학생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교육부와 협력하여 취업지원 시스템 확대 구축
 -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법무부에 산재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상호 공유 및 취업지원 시스템 확대 구축
 - ※ 현재 뿌리산업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한 취업연계 시스템만 구축
 -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취업 시 전공과목 심사를 폐지하고, 이공계학사의 구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방문동거(F-1) 사증·체류지침, 특정활동(E-7) 사증·체류지침, 구직(D-10) 사증·체류지침 개정('15. 2분기)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사업장 사업주 부담금 부과 검토

① 과제 내용

- 장기간(10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

②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외국인력을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장기간 의존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 유도

* '10, '11, '12년 고용부담금제 부과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영세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무산

- (주요내용) 사업주 부담, 내국인보호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추진방안 마련 후 의견수렴('15.상)

* 예 : 영세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서 생존력을 검증받은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한정하여 부과 검토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1] 과제 내용

-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 추진

2]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동포의 국내 유입을 통한 적정인력 공급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 동포의 국내취업 문제는 노동시장 정책의 견지로 결정되는 단순 외국인력(E9)과 달리 동포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
-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동포 활용·관리방안 마련
 - 다만, 방문취업제의 경우 일부 업종(건설, 서비스업 등)에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내국인 고용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적극적 동포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동포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① 과제 내용

-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

* 상시이건 조정, 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TF) 설치 등 검토

② 추진배경

- 이민정책은 비자 및 국경관리, 영주·국적부여, 이민자 사회통합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경제·복지·안보·치안·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음

* (예시) 단순노무 외국인력 도입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소득층 편입우려가 높아 정주 허용시 복지·통합비용 증가 우려

-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민 정책에 대한 조정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 공동개최 방안 마련 ('15.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① 과제 내용

- 지난 10년간 정책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교육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률 제고
 - 노령화 시대 패러다임에 맞춰 정년 및 연금제도 등을 개편

② 추진배경·주요 내용

- (추진배경)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그간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출산율 회복 지연, 급속한 고령화 진행
 - 향후 수립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
- (주요내용) 그간 대책 평가,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그룹 논의, 정부내 과제 발굴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초안 마련
 - 대국민토론회, 시안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및 전체회의 개최 ('15.1월)
 - * 그간 대책 평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논의
- 국민 의견수렴*, 정부 협의체 운영 등 기본계획 초안 마련 ('15.2~6월)
 - * 지역별 현장방문, 여성계·시민사회·경제계·노동계·종교계·교육계 간담회 등
-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개최 ('15.7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15.9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1] 과제 내용

- 근로자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공무원·교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 부여
 - * 공공부문 콜센터의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 유도
-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 시간제, 여성 채용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점검(연2회 총 1,000개)과 현장지도·교육·안내를 병행

2] 주요 내용

- 공공부문 100인 이상 콜센터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선도사례를 창출하여 지속 홍보

< 공공부문 콜센터 시간선택제 확대 도입(안) >

- ▶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콜센터*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신규인력 증원시, 퇴사자 충원시,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시, 시간선택제 채용을 확대
 - 피크타임대 업무분산 가능, 인수인계 용이, 감정노동 업무 특성으로 시간선택제 활용시 고객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효과
- ▶ 공공부문 100인 이상 콜센터에 대한 전문컨설팅 우선 지원('15.2월) 후, 10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서도 희망시 지원('15.6월) 확대

- 시간선택제 채용 주요 사업장(총 1,000개)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차별적 처우 여부 등을 현장점검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공공부문 100인 이상 콜센터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2월) 및 시간선택제 도입 선도사례 창출·홍보(4월)
- 사업장 대상의 현장점검 실시(연중)

① 과제 내용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
 - *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6개교에 '15년 2,240억원 지원 계획
- 모범사례가 창출되도록 '15년부터 정부지원금* 대폭 차등화
 - * 등급별 정부지원액 (현재) 32~58억원 → (개편) 20~80억원

②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교육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계관점대학평가 제도('08년 도입)를 운영 중에 있으나,
 - 대학 자율참여와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지원금 차등폭*(32~58억)이 낮아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제한
- (주요내용) '산업계관점 평가결과' 재정지원연계 및 지원금 차등폭 확대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모범사례 창출
 - 산업계관점 평가결과는 현행 평가방식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평가지표 수정보완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원과 연계
 - 산업계 수요인력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강화 및 지원항목 신설, 배분비율 조정을 통한 지원폭 확대(현행 2→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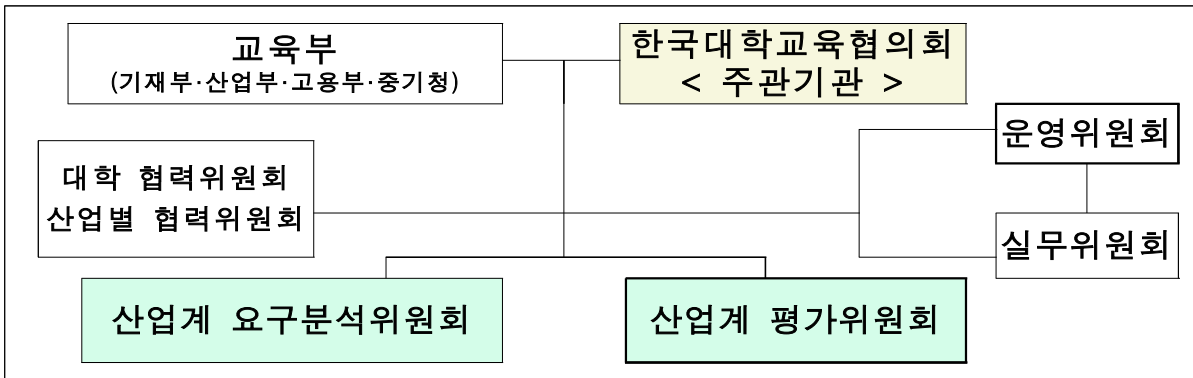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비 집행내역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15.2월)
- 산학협력선도대학 연차평가지표 의견수렴 및 계획(안) 공고('15.3~4월)
- '15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연차평가 및 국고지원('15.5~7월)

참고1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개요

- (목적) 산업계 수요(Needs)를 기반으로 대학교육을 평가하여 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확산 유도('08년 시작)
- (주체) 교육부와 대교협 주도하에 기업 등이 참여
 -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평가계획 등 마련
 - 영역별 분과위원회가 요구분석 및 평가 등 실시



- (대상) 전 산업분야와 4년제 대학 위주 평가

평가주기	1주기				2주기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2008 (‘08.8~’09.2)	2009 (‘09.7~’10.4)	2010 (‘10.7~’11.5)	2011 (‘11.7~’12.5)	2012 (‘12.6~’13.5)	2013 (‘13.6 ~ ’14.2)
분야	자동차, 설계, 사공, 엔지니어링, 은행, 보험, 증권	석유화학, 화장품, 제약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금속철강, 신소재	조선, 일반기계, 자동차, 건축, 토목,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자반도체, 컴퓨터(SW), 정유석유화학, 정밀화학(화장품,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디자인)
	총 7개 분야	총 3개 분야	총 3개 분야	총 2개 분야	총 7개 분야	총 8개 분야*
조사기업	24개	32개	41개	31개	1,517개	2,163개
평가대학	13개	18개	33개	30개	41개	43개
평가학과	32개	29개	74개	36개	103개	112개

* 3개분야(바이오 의약, 바이오 의료기기, 디자인)는 요구분석만 추진 → ‘14년 평가예정

- (평가) 산업계 인사에 의한 요구 분석 및 대학 교육과정 평가, 졸업생·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
- (활용) 대학 교육과정 개편, 분야별 우수 대학·학과 정보 제공,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자료 등으로 주로 활용

참고2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개요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목적)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의 공생발전 견인
- (사업기간) 1단계('12~'13), 2단계('14~'16)
 - * 1단계 선정대학은 재평가하여 2단계 지원여부 결정(우수대학은 계속지원, 미흡대학은 강제탈락 등), 여타 대학은 신규평가 후 선정시 3년 연속 지원
- (사업비) '14년 2,388억원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2호의 대학, 산업대학 중 평가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 (1단계) 정량(10%, 13개지표점검), 정성평가(80%)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10%)를 종합하여 대상 선정(51개교)

평가방법	평가내용	반영비율
핵심성과지표 정량 평가	취업률,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실적, 기술사업화 실적 등 13개 핵심성과지표 실적 점검 실시	10%
사업 실적·계획 심사 정성 평가	산학협력선도 비전, 대학체제 개편, 교육과정개편 및 운영, 산학연계체제 구축 등 평가	80%
산업체 설문조사	대학-산업체간 밀착도, 협력도, 산학협력 기업 만족도 등 설문	10%
가·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창조경제 실적·계획/구조개혁 실적·계획 · (감점) 대학책무성 위반사항, 허위성과 보고 등 	+10%~ -7%

- (2단계) 1단계 사업을 수행한 대학(5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되, 정량평가* 등을 통해 대상 채택

* 정량평가(35%, 13개지표점검) + 정성평가(60%) + 수요자 만족도 조사(5%)

평가방법	평가내용	반영비율
핵심성과지표 정량 평가	취업률,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실적, 기술사업화 실적 등 13개 핵심성과지표 실적 점검 실시	35%
사업 실적·계획 심사 정성 평가	산학협력선도 비전, 대학체제 개편, 교육과정개편 및 운영, 산학연계체제 구축 등 평가	60%
산업체 설문조사	대학-산업체간 밀착도, 협력도, 산학협력 기업 만족도 등 설문	5%
가·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창조경제 실적·계획/구조개혁 실적·계획 · (감점) 대학책무성 위반사항, 허위성과 보고 등 	+10%~ -7%

① 과제 내용

-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정원·건물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 강화

② 주요 내용

- (설치요건 완화) 계약학과 운영성과 및 입학비율 등을 감안하여 정원제한(입학정원의 10%)을 추가 확대(최대 20%)
 - 산업체 소유시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가 임대한 건물에서도 계약학과 운영 허용
 - * 현재 계약학과는 대학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나, 예외적으로 산업체가 소유시설을 무상제공한 경우 외부에 설치 가능
-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지원비중 확대('17년까지 50%, 중기청)
 - 재교육형 계약학과 뿐만 아니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기업이 부담한 훈련비에 대해 사업주 훈련지원금 지원(고용부)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교육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실태조사('15. 5~10월) 후, 설치요건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15.11월)
- (고용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개정('15.1.1 시행)
- (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운영계획 수립('15.1월) 및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지원 확대('15.3월~)

① 과제 내용

- 공기업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 ·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 방안 강구

* 실태조사를 거쳐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 · 채용비율 확대 등 세부방안 마련 후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확산 유도

②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과도한 취업준비, 스펙쌓기로 인해 청년층 실업기간 증가 등 인적자원 활용이 비효율적
 - 근무경력 없는 졸업자 위주의 대규모 신규채용방식에서 벗어나 근무경력과 직업능력이 우대받는 채용방식과 관행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공기업 채용 실태조사를 거쳐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 채용비율 확대 등 세부방안 마련
 -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조기취업을 유도하고, 과도한 스펙쌓기보다 경력축적이 구직에 유리하다는 인식 확산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공기업 조기취업자 및 경력자 채용 관련 실태조사(~'15년上)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방안 마련 (~'15년下)

일학습병행제 확대 및 도제특구 지정

① 과제 내용

- 재학생 · 고교졸업자 · 대기업 등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확대
* 전체 참여기업 수: ('14.10월) 1,797개 → ('15) 3,000개 이상 목표

② 추진배경 · 주요 내용 · 세부 실천방안

- (추진배경) '13.9월 도입 이후 일·학습병행제의 지속적인 양적 확산에 따라 질적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
 - 제도 수혜범위가 아직 제한적(특성화고 졸업생·중소기업 중심)이고, 추진주체도 협소(고용부 유관기관 중심)한 실정
- (주요내용) 한국형 직업학교·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과 연계하여 재학단계로 확대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의 시범사업 확대
 - 지자체에 참여기업 선정권한을 이관하고, 공동훈련센터 공모·추천, 우수 현장훈련기업 육성 등 지역의 역할 강화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모범사례 발굴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모집 (연중 지속)
* '15년 3천개 기업 발굴 → '17년까지 1만개 기업 선정 목표
- 대표성 있는 산업별단체를 통한 교육훈련 기준 및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자격설계 등 실시 → 산업계 주도성 강화
- 학습근로자 보호, 수료생의 산업계 통용자격 부여 등 관련 법령 제정 ('15.상)



자유학기제 확산

1] 과제 내용

- (자유학기제 확산*)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반영 등 제도화,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우수사례를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참여 중심 수업,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13년 도입, '15년까지 단계적 확대 후 '16년 전면 시행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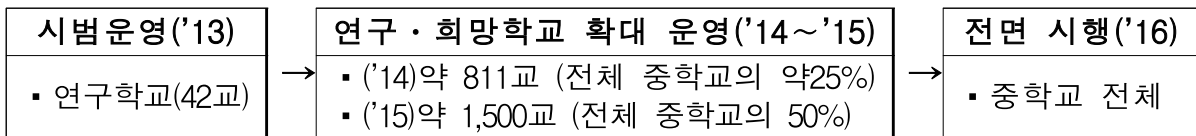
- '16년도 이후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전면 시행을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관련 근거 마련

- 원활한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을 '15년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

* '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15년 고시)'에 반영하여 '16년부터 적용

- 자유학기의 학생 체험·활동 중심 수업이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및 컨설팅, 베스트 프랙티스 발굴·보급 등 추진

- 연구·희망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 모든 중학교로 성공사례 확산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계획 수립('15년 상반기)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년 하반기)

참고

LAC (Liberal Arts College)

- (개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이 없는 학부 중심의 4년제 대학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를 중점 교육
 - 주로 사립학교이고 미국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대학 형태
- (특징) “작지만 강한 대학”을 모토로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
 - (소규모) 재학생 규모가 2천명 내외이고 한 학년에 4~5백명 내외를 선발하여 우수 인재 집중 양성
 - (학부중심) 석·박사 과정, 연구에 중점을 두는 종합대학과 달리 학부중심의 폭넓은 교양교육과 기초학문 교육을 중시
 - (질 중심) 교수의 학부교육 전념과 교수 1인당 10인 내외의 소수학생 지도로 질 높은 교육수준 유지

<종합대학과 LAC 비교>

종합대학(University)	LAC
대학원 중심(석박사 과정 개설)	학부 중심(석박사과정 예외 운영)
연구 중심	교육 중심
법학, 의학, MBA 등 전문분야 중시	교양, 기초학문분야 중시

- (현황) 미국내 230여개의 LAC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통령 등 우수 인재 다수 배출
 - 오바마(옥시덴탈)를 포함 미국 대통령 중 15명이 LAC 출신이고 힐러리 클린턴(웨슬리), 스티브 잡스(리드)도 이들 학교 출신
 - ‘14.8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우수대학 순위 5개* LAC가 상위 10위안에 포진

* 윌리엄스**(1위), 스위스모어(4위), 퍼모나(8위), 육사(9위), 에머스트(10위)

** 1793년 이프라임 윌리엄스가 설립,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등 배출, US News&World Report 발표 ‘14년 LAC 평가순위 1위 등

① 과제 내용

- (전문대 기능회복)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탈피하고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로 체제 개편

②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양적 확대 위주의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부족으로 산업체 요구수준과 양성인력 간에 미스매치 심화

- 전체 전문대학중 15개 대학(11%)이 만명 이상 학생수 보유
- 전문대학 전공분야와 취업분야 간 미스매치도 심각

* 신규취업자 직무불일치율(노동연구원) : (4년제) 14%, (전문대) 26%

- (주요내용)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를 중점 육성* 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성 높은 직업인재 양성

* 전문대학 특성화 : ('15년) 2,169억원 70개교 지원 → ('17년) 84개교까지 확대·지원

** 특성화사업 평가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비중 확대 등 검토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특성화전문대학 4개교 추가 선정('16년 3월)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 대학 중간평가('16.5월)
-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추가 선정('17년)

참 고

전문대와 4년제 대학 학과개설 분야 비교

		전문대	4년제
인문계열	언어·문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기타어, 문예창작 , 교양어	일본어, 중국어, 영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기타유럽어, 국어·국문, 기타아시아어, 교양어, 언어학
	인문과학	인문 일반	문헌정보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 교양인문학
사회계열	경영·경제	경영·경제	경영학, 경제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경상학
	법률	법	법학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 언론·방송, 행정, 비서	가족·사회·복지학, 언론·방송·매체학, 행정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교육계열	유아·특수	유아교육, 특수교육	좌동
	초·중등교육	-	초등교육학,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 건축	좌동+조경학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건설, 토목 지상교통, 항공, 해양 기계, 금속, 자동차	좌동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전기, 전자, 제어계측 광학·에너지	좌동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 섬유, 신소재	좌동
	컴퓨터·통신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좌동
	산업·화학·기타	산업공학, 화학공학, 기전·응용공학	좌동
	농림·수산	농수산, 원예	좌동
자연계열	생물·화학· 환경	생물, 자원, 환경	생물학, 생명과학, 자원학, 환경학, 동물·수의학, 화학,
	생활과학	가정관리, 식품·조리, 의류·의상	좌동
	수학·물리· 천문·지리	지적(地籍)	수학, 통계학, 물리, 천문기상, 지구지리, 과학,
의약계열	간호	간호	좌동
	의료, 약학	-	의학, 치의학, 약학
	치료·보건	보건, 재활, 의료장비, 의무행정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예체능계열	디자인	산업·시각·패션디자인, 기타	좌동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무용·체육	무용, 체육	좌동
	미술·조형	미술, 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연극·영화	연극·영화	좌동
	음악	음향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14.3월 기준

① 과제 내용

- (사이버대학 質제고) 고졸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質을 담보하는 사이버대학 정책 추진
 -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등록생 수를 축소하고 대학 자율적 특성화를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②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사이버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법」상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 제고를 모색할 시점
 - (주요내용)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자발적 특성화 지원을 동시 추진
 -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의 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자격증 실습과목 등의 운영을 정상화
 - 원격교육으로도 내실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실습과 교수-학생 간 1:1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학과 특성화 지원*
- * '15년 예산 48,500만원(세종사이버 조리산업경영학과, 영진사이버 뷰티케어학과, 한양사이버 디지털도시건축전공, 부산디지털 사회복지학과)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15. 2월)
 - * 시간제 등록생 모집규모 조정 등
-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특성화사업 국고 지원('15. 4월)
-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특성화사업 완료('15. 12월)

참고 1

사이버 대학 현황

구분	설치 주체 (학교법인)	대학명	이사장	총장	개교 (최초개교)	2013학년 입학정원	2013학년 편제정원	2013.4.1 재학생	소재지	동법인 학교
학사 과정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	김용철	조인원	'09('01)	3,000	9,165	9,143	서울	경희대
	광동학원	국제사이버대	이종록	박영규	'09('03)	900	2,710	2,520	수원	군장대
	영광학원	대구사이버대	이상희	(공석)	'09('02)	1,500	3,930	4,196	경산	대구대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	송정계	추만석	'09('02)	1,000	2,700	3,122	부산	동서대
	동원육영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이남주	박 철	'09('04)	1,600	5,000	4,955	서울	한국외대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	장인환	강 인	'09('01)	3,270	9,470	11,413	서울	(신일고)
	대양학원	세종사이버대	유명환	김지철	'09('01)	2,180	5,560	5,877	서울	세종대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	이화택	성시중	'09('02)	1,500	4,750	4,744	익산	원광대
	고려중앙학원	고려사이버대	김정배	김중순	'09('01)	2,500	8,800	9,097	서울	고려대
	송실사이버 대학교	송실사이버대	박준순	한현수	'09('01)	1,650	5,100	4,712	서울	
	한양학원	한양사이버대	김종량	임덕호	'09('02)	3,240	11,785	13,095	서울	한양대
	화신학원	화신사이버대	한백용	조인곤	'09	430	1,350	1,025	부산	부산경 상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변원태	김용달	'10('02)	990	3,740	4,406	서울	-
	서울디지털 대학교	서울디지털대	엄영석	조백제	'10('01)	3,000	9,460	12,380	서울	-
	한문화학원	글로벌사이버대	권원기	이승현	'10	860	2,715	2,231	천안	국제교육 종합대학 대학교
	열린학원	열린사이버대	장일홍	신성균	'11('01)	1,000	4,000	3,439	서울	-
건양학원	건양사이버대	구본정	김희수	'12	900	1,800	1,118	대전	건양대	
전문 학사 과정	영진교육재단	영진사이버대	이승민	최재영	'10('02)	1,300	2,600	3,573	경산	영진대
	이후학원	한국복지사이버대	김성이	최원석	'11	690	1,270	1,803	경산	-
사이버대학 19개교						31,510	95,905	102,849		
학사 과정	경북학원	영남사이버대	김중화	장영아	2001	600	1,950	1,305	경산	영남외대
전문 학사 과정	한민족학원	세계사이버대	박정순	조항대	2001	1,300	2,600	2,904	경기 광주	(한민학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						1,900	4,550	4,209		
합계						33,410	100,455	108,262		

※ 영남사이버대 : 2003년 세민디지털대에서 영남사이버대로 교명변경 및 학제 전환(2년제 → 4년제)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 2008년 한성디지털대에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로 교명 변경
 ※ 화신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09. 3월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에서 화신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고려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0. 2.26. 한국디지털대에서 고려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송실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2. 6월 한국사이버대에서 송실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주체) 학교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대학설립 허용(사립학교법 3조)
- (요건)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4대요건* 충족 요구(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5~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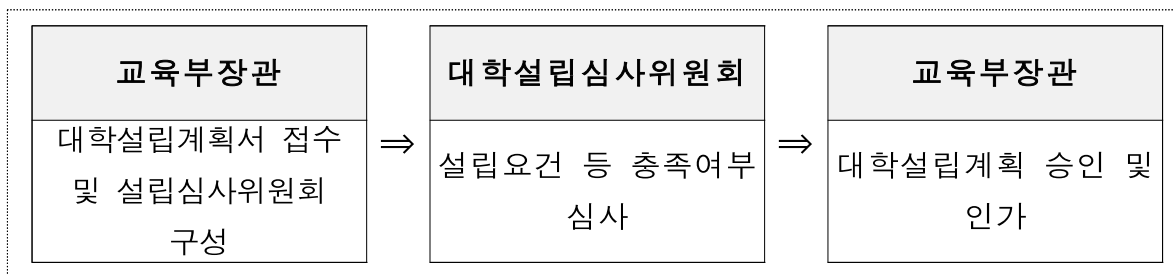
* 校舎(교육시설 및 학교시설), 원격설비(일반대학은 학교용지), 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대학설립요건>

	대학(4년제)	사이버 대학
▪ 교사	학생1인당 기준면적(m ²) (인문사회12, 자연과학17, 공학20 등)	입학정원당 기준면적(m ²) (1000명미만 990, 3000명이상 2,475 등)
▪ 교지 (설비)	학생정원 400명 이하(교사건축면적 이상), 1000명이상(교사기준면적 2배이상) 등	원격설비요건에 대해 교육부 별도 고시
▪ 교원	교원1인당 학생수(명) (인문사회25, 자연과학20 등)	교원1인당 학생수(명) (200명)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100%이상(최소 100억원 이상)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이상(최소 35억원 이상)

- (절차) 대학설립 요청자의 대학설립계획서 제출과, 대학설립심사 위원회의 심사 및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대학 설립

<대학설립절차>



2. 경제활력 제고

① 과제 내용

-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② 추진배경·주요 내용

- (추진배경) 내년도 소비·투자 등 내수보완과 연중 상저하고 경기흐름(전망) 완화를 위해 조기집행 필요

* '15년 성장률 전망(전년동기비, %)

: <한은> (상)3.7 (하)4.1 (연간)3.9, <KDI> (상)3.4 (하)3.6 (연간)3.5

- (주요내용) 상반기 조기집행률 58% 추진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 및 공공기관 집행관리 대상 주요사업의 58%를 상반기에 집행
- 특히 중앙의 경우, 경제, 민생에 미칠 영향이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대상은 상반기 중 60%수준 집행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연초부터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점검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관리
- 또한, 재정사업 발주·계약 등 관련 절차가 '15년초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

① 과제 내용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 확대

* 과소배당 판단기준 · 중점감시기업(focus list) 지정기준 마련, 주주관여 등

②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국내기업의 과소배당은 외국인 투자저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장애요인
- (주요내용)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적정배당 유도를 위해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 배당주형 추가
 -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소배당 판단기준 확립
 - 주주관여 · 중점감시기업(focus list) 지정 등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방식 · 절차 등에 관한 국민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 마련
 - 배당주형 위탁투자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국민연금의 위탁투자 유형에 배당주형 신설(4월)
- 국민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 수립 및 기금운용위원회 보고(2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① 과제 내용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연금수급자의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 확대

* 예) ('14)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및 5백만원 이내 → ('15) 2배 및 7.5백만원 이내

②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령층은 국민연금 대부를 받지 못할 경우 고금리 사채 등에 노출될 우려
- 연금수급액이 높고 대부수요가 있는 경우(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일정요건* 하에서 대부한도를 확대(5백만원 → 7.5백만원)

*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이내 및 상환액이 연금액의 1/2 이하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15.3월)
- 노후긴급자금 대부한도 확대 시행('15.7월)



행복(연합) 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① 과제 내용

- 행복(연합)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내에서 확대

② 추진 배경

- 기숙사 조기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도심지 내에 건설되는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제한된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필요
- * 행복(연합) 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 부지 밖의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여러 대학 학생들이 거주하도록 건립한 기숙사

③ 개선 방안

- 학교 부지 외부에 건설하는 행복(연합) 기숙사에 대해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용적률 상한(예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500% 등

④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6월)

① 과제 내용

- 전기료 절감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행복(연합) 기숙사를 **학교시설로 인정**

* 행복(연합) 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 부지 밖의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여러 대학 학생들이 거주하도록 건립한 기숙사

② 추진 배경

- 행복(연합)기숙사는 각 대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대학생들의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 특정 대학교의 시설로 간주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인정받지 못하여 전기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

③ 개선 방안

- 운영목적상 교육용 시설이 명백하므로, 학교부지 밖의 기숙사도 **학교시설로 인정**

→ 일반용보다 저렴한 **교육용(학교시설)**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기숙사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④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15.9)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하는 행복(연합)기숙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 인정하는 조항 신설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시 추진 및 학원 옥외가격 표시 확산

1] 과제 내용

-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 공시하고, 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전국 확산 유도

* 옥외 :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말하며, 업소별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의미

** 가격 :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출 가격

2]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특목고(체육고·마이스터고 제외*)·자사고 등 학비를 공시하여 교육비 투명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확대

* 체육고·마이스터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 학원의 교습비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및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

- (주요내용) 학교알리미에 특목고(체육고·마이스터고 제외)·자사고 대상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항목 신설

* '16년부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해당항목 추가 추진

-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옥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 의무(학원법 제15조 제3항)

* 학원법 제15조의2(정보의 공개)에 따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전국학원정보)을 통해 학원비 등 정보공개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시

-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학교 관계자 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 : '15.3~4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 '15.5~12월
- '16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신설 추진 : '15.6~9월
- 신설항목을 '16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서에 반영 : '15.10~'16.2월

○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확대 유도

-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권고 : '15.1~12월
- ※ 충청북도에서는 「학원법 조례 시행규칙 제9조(교습비 등 게시·표시)」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중
-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시 '옥외가격표시제'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홍보 강화(학원장 연수시 및 학원담당자 회의시) : '15.1~12월

① 과제 내용

- 현행 교과서 가격자율제 하에서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필요
- 초중등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등 교과서 가격안정화 방안 검토

②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가격자율제 하에서 교과서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정부재정 및 학부모 부담 가중
- (주요내용) 교과서 가격자율제*의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검토

*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제33조) 검정 및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출판사가 정하도록 가격자율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조정명령을 할 수 있음

(동 규정 제41조) 가격조정명령에 대해서는 2014.3.1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가격상한제를 포함한 가격자율제 교과용도서의 가격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검토(~'15.5월)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① 과제 내용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 공공물가 정보를 확대 공개하여 적정수준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 지방공공요금(7종):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② 주요 내용

- (현행) 행자부 홈페이지,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광역 지자체 평균 공공요금 공개

- 행자부 홈페이지: 매월 7종 공개

- 17개 시·도 홈페이지: 매월 2종~10종* 공개

* 10종: 기존 7종, 정화조 청소, 고등학교 납입금, 공연예술관람료

- (개선)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별 지방 공공요금 공개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시·도별(기초포함) 사전실태조사: '14. 12월말

-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기관협의: '15. 1월부터

- 지방공공요금 공개범위 확대계획 수립: '15. 3월



공영TV홈쇼핑 채널 신설

① 과제 내용

- 증기제품·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

② 주요 내용

- TV홈쇼핑사의 증기제품·농수산물 편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 공영홈쇼핑 신설을 통해 TV홈쇼핑 산업 전반을 개선하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모범 모델 제시
 -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증기·농수산물 등 납품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계 전반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
 -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증기제품 및 농수산물로 100% 편성
→ 공영 홈쇼핑의 설립 취지 구현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신규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15.1월)
- 공영TV홈쇼핑 개국('15.12월)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① 과제 내용

-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으로 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 강화

* LCC(Low Cost Carrier):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항공운임을 제공하는 항공사

② 주요 내용

- LCC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비용에 민감한 구조로, 해외 저가항공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가격경쟁력 강화 필요

○ 세부 내용

- 전략적 항공회담 개최를 통한 신규 국제항공 노선 지속 확충
- 인천공항 탑승동 일부를 LCC 전용공간으로 개편 → 사용료 50% 감면
-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LCC로 확대적용 → 자동화로 비용절감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연중)
- 셀프 체크인 카운터 운영('15.1월)
- 항공사와 협의 후 탑승동 내 LCC 전용게이트 존 운영('15.12월)

① 과제 내용

-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부품시장 기반 확대

* 대체부품 :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소기업 제작 부품으로서,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사용

② 추진배경·주요 내용

- (추진배경) 성능차이가 없음에도 대체부품 대비 비싼 OEM 부품이 대부분 독점 공급됨에 따라 수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

* OEM 부품 M/S(%): 미국 66, EU 55, 한국 95

- (주요내용) 대체부품 사용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대체부품인증제*를 시행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추진 →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 절감

* 공신력있는 민간기관(예: 자동차부품협회)이 대체부품의 품질을 인증

- 대체부품 사용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환급(예: 부품가액의 20%) 등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시행('15.1월)
-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체부품 관련 내용 반영('15하반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 확대

① 과제 내용

-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강사초빙료 등으로 확대

② 주요 내용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 확대
 - * 문화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내국인 접대비 한도액의 10% 금액내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
 - (현행) 공연·전시회·박물관·문화관광 축제·관광공연장 입장권, 비디오·음반·간행물 구입비 등
 - (개정)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연료 등 포함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5.上)

정부 R&D 과제선정시 Bottom-up 방식 확대

1] 과제 내용

- 정부 주도 Top-down식 과제선정(지정 공모형)을 Bottom-up식으로(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형) 전환 확대

2] 추진배경 · 주요 내용

- (현황) 정부 주도의 Top-down식 위주로 R&D 지원과제를 선정하면서 정작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부족*

* '13.7월 산기협 설문조사 결과, 출연연의 기업 수요 반영이 미흡한 원인으로 '정부 R&D 정책과 기업 수요간 불일치(49.2%, 복수응답)'가 최고 응답률 기록

- (내용)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 지정형·자유공모형 등 Bottom-up 방식의 지원 확대

* (예) 산업부: Bottom-up 방식 과제(기업 주관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를 '17년까지 산업부 R&D의 50%까지 확대('14년 33%)

R&D 과제 유형

- *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를 제시하는 방식
-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
- *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는 방식(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정부 R&D 혁신방안(4월)」에 포함하여 '15년도 재정전략회의에 상정 추진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1] 과제 내용

-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2] 추진배경·주요 내용

- (현황) 국가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R&D사업에 경쟁방식 도입
 -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
 - * '14년중 경쟁형 R&D 제도 시범도입(미래부 등 4개 부처 10개 사업, 217억원 규모)
- (내용)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경쟁형 R&D 방식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아 결과물의 수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 등에 적합

경쟁형 R&D 추진방식(예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① 경쟁기획	▪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	대형사업 중·장기사업
② 토너먼트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 과제기획, 원천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 전단계별로 중간 평가를 통해 차례로 일부가 탈락	대형사업 중·장기사업
③ 후불형 서바이벌	▪ 다수의 연구단이 동일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하여 후불 지급	소형사업 단기사업
④ 병렬형 과제수행	▪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지원	중소형사업 중·단기사업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정부 R&D 혁신방안(4월)」 마련시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내용을 반영 추진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① 과제 내용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5년→10년)

② 추진배경·주요 내용

- 현재 조특법상(\$144) R&D 세액공제 미공제잔액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한 수준
 - * 주요국 R&D 세액공제 이월제도: (미국·캐나다) 20년 (영국) 무제한 (프랑스·호주·캐나다) 환급제 운영
 - 이로 인해, R&D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정작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 R&D 투자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고, 수익 발생까지 상당 기간 소요
 - * R&D 투자 애로요인 중 'R&D 자금부족' 응답률(%), '11년 KIAT 설문조사): (벤처기업) 86.4 (중소기업) 61.9 (중견기업) 32.0 (대기업) 26.0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투자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① 과제 내용

- 선제적 수요 창출·인프라 조성 등 공공선도 프로젝트 추진, 신속 인증제도(Fast-track) 활성화 등 융합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② 주요내용

- 공공부문에서의 선제적 수요 창출, 인력양성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Fast-track)' 활성화를 통한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 그간 안전성 이유 등으로 동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점 등을 개선, 기업의 적합성 인증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

- (요건) 개별 법령상 허가 등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융합신제품
- (심사) 제품 인허가 소관부처는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인증기준 마련, 시험·검사 등 실시
- (인증) 안전성 등 검증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6개월 기한내 인증 부여 (인증 획득시 개별 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출연(연) 등과 T/F 구성·운영('15.上)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15년중)

① 과제 내용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속히 정비

② 주요 내용

-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발생한 과세이슈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
 - (법인세)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부담 방지
 - * (현행)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시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문제 발생
→ (개편 例)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인식
 - (부가가치세)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거래비용 축소
 - *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개편 例)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과세기준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① 과제 내용

-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 제고*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변화 관련 사업모델 개발 등으로 국내기업의 개도국 사업 진출 지원

※ 기후금융이란, 온실가스 배출 감소(감축)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 감소 및 복원력 증대(적응)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

②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사업 자금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공적재정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민간자금 활용 필요**

* 녹색채권 발행(억불): ('11) 12 → ('12) 31 → ('13) 110 → ('14.1~11월) 352

- 국내적으로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

-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기반 마련

- 내년부터 GCF 사업의 본격화 전망에 따라 GCF와의 협력을 제고하고 **해외 기후변화 관련 사업 참여를 강화할 필요**

- GCF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내관련 기관 및 기업들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기후금융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15.상)**
- **관련부처(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산업부, 환경부 등) 및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15.하)**



지역별 대학·출연연·혁신지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① 과제 내용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 1:1전담 대기업과 연계*하여 '15년 상반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및 성과창출 본격화('14년까지 4개소 출범)
 - * 대구/경북삼성, 대전/세종SK, 부산롯데, 경남두산, 인천한진, 경기KT, 광주현대차, 전북효성, 전남GS, 충북IG, 충남한화, 강원네이버, 서울CJ, 울산현대중, 제주다음
-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대학·유관기관·혁신지원기관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 확대
 - * (대전) 대전-커넥트, (대구) NT 100 프로젝트, (전북) 탄소소재 적용 시범사업 등

② 주요 내용

- 대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벤처·창업 지원 강화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 대기업의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상시 멘토링 강화, 벤처·창업 육성 공모전 개최 등
 -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 우수인력 파견 및 인건비 일부 지원 검토
 -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벤처 해외진출 확대
 - * 예) 삼성 OIC Accelerator(실리콘밸리, 뉴욕 등 11개 프로젝트 운영중) 등 활용
-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유관기관과 지역센터간 MOU 체결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완료시점	주요내용
'15.2월	광주, 충북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4월	부산, 경남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6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1 추진 현황

- '14년 대구, 대전센터 확대 출범에 이어 전북, 경북센터 출범, 세종 창조마을 시범사업도 본격 착수
 - ※ 대구센터 개소(3.17) 및 확대 출범(9.15), 대전센터 개소(3.10) 및 확대 출범(10.10), 세종 창조경제 시범마을 출범(10.10) 전북센터 출범(11.24), 경북센터 출범(12.17)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10.30) 및 운영중
 -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등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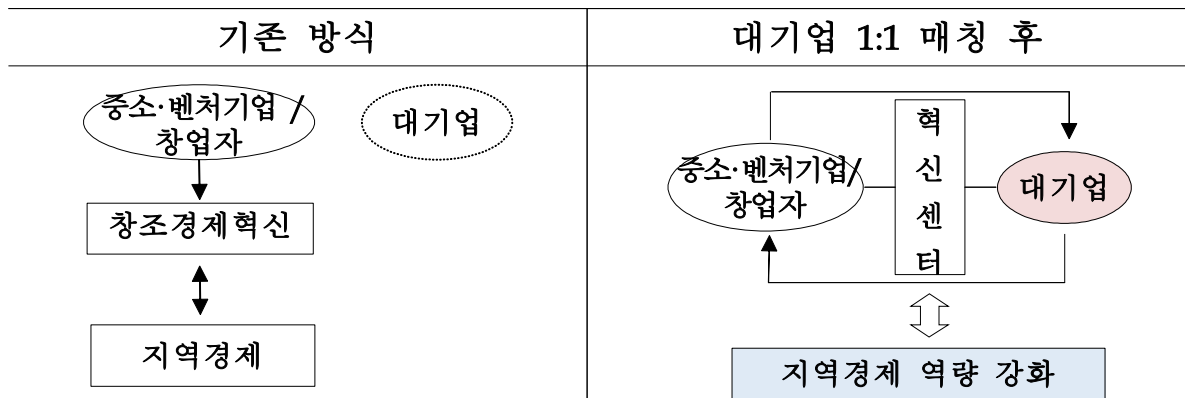
2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 (창업 허브)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 인큐베이팅 등 지원
- (지역혁신 거점) 지역 혁신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역량을 총집결하고, 지역 창조경제 전략 및 사업발굴·기획 등 수행
- (협력성장의 엔진)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

3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연계 의의

- 대기업이 창조경제 생태계의 적극적인 player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태계의 약한 고리가 보완되고 비로소 창조경제 생태계가 완성

< 혁신센터-대기업 연계에 따른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변화 >



① 과제 내용

-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에 R&D, 정책자금 등의 우선 지원을 위한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

② 추진 경과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 마련(‘14.1.29, 창조경제위원회)
 - * 아이디어 성숙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실물모형 제작, 기술개발, 자금 등 13개 부처(청) 64개 사업과 연계
-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14.7.31, 창조경제위원회)

③ 주요 내용

- 실제로 연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사업은 제외하고, 추가 사업 발굴·확대를 통해 관리 체계화
- 실질적 연계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배정방식 확대
 - 시기를 나누어(상·하반기 등) 공모하거나,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타운 아이디어의 연중 지원이 가능한 환경 조성

④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14.12~’15.1)
- 2015년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15.2)

1] 과제 내용

-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지식재산인 소멸특허를 창업·상용화 등에 활용 지원
- * 대학이 공유자인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지분양도, 사용권 허용 등

2] 주요 내용

- 대학·공공(연) 등과 같이 특허 실시(사용) 능력이 없는 공유자가 공유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제도를 개선
- * (현행)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유특허 이용(지분양도 등) 불가 (개선) 다른 공유자 동의 규정을 폐지하여 공유특허를 이용한 이익창출 기회 보장
- 3D 프린팅, 물질특허 등 시장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주요 소멸(소멸예정)특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련 업계에 제공
- 소멸특허에 대한 전략적 분석(3R 전략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 상용화, 기술발전 등을 지원
- * (Root) 히스토리 조사 → (Relationship) 원천-후속특허분석 → (Roadmap) 전략 도출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의견수렴 및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국회제출(15. 12월)
-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소멸된 원천특허에 대한 현황을 제공(6월)하고,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연중)

① 과제 내용

- 핵심소재 개발, 시장선점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수요 창출, 원가절감, 인력난 완화 등 애로 해소

② 주요 내용

- (반도체) 2호 반도체펀드(1,500억원) 출시* 등 성장기반 강화
 - * 1호 펀드('12, 1,350억원) : 기존 정책자금 펀드에 대기업이 추가자금을 투입
 - ** 2호 펀드 : 대기업이 상생협력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 펀드를 유치
- (조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조선용접공 취업비자(E-7) 한시 확대 검토
 - * 선령 25년 이상 여객선 교체수요 : ('15)6척 ('16~'17)29척 ('18~'22)57척
- (기계) 기계유통·재제조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거래소 개장** 등을 통하여 중고기계 교체수요 촉진
 - * 단기성 리볼빙 자금 등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 제공(최대 2,000억원)
 - ** 기계거래소 내 중고기계거래시장 개설, 기계담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기계산업 서비스화 촉진
- (철강·화학) 차세대 소재개발, 납사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공동 배관망 구축*, 저가원료 확보** 등 비용절감 지원
 - *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잉여에너지, 부산물 교환 및 생산설비 공동 활용을 위한 공동 배관망 구축
 - ** 자원협력위 등을 활용하여 자원보유국과 적극적인 합작투자 방안 모색 및 현지투자 기업의 애로 발굴·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① 과제 내용

-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산은, 15조원)을 마련하여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유도

② 주요 내용

- (지원방식) 출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
 - * 설비투자펀드 등 기존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대출중심의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
 - (투자 중심)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 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대형 프로젝트 중심)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지원
 - (전체기업 대상)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설비투자펀드와 차별화
- (재원조성) 산업은행의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정부지분 현물 출자 포함 2조원 이상 자본보강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15년초) 및 가동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1] 과제 내용

-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제도
 - 비용·편익 분석, 대안간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품질 개선
 -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부담을 경감하여 부처 스스로 규제개선에 대한 적극적·상시적 추진 동기 부여
- * 8개 부처(국토·산업·농식품·환경·해수·문체부, 중기·산림청) 대상 시범사업 실시 중(14.7~)

2] 주요 내용

- (적용범위)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는 규제위 심사를 거쳐 적용제외
- (측정비용) 피규제자에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 기준, 순비용(현재가치)을 연간균등순비용으로 환산
- (평가) 기관평가에 운영 실적을 반영하고,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등에 연 2회 결과 공표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규제비용분석·검증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연구센터 확대*, 비용분석 매뉴얼 보완·배포 등 인프라 구축(15.3월)
 - * KDI 센터(2실, 12명 → 3실, 20명), 행정연 센터(2팀, 11명 → 3팀, 15명)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에 맞춰 전 부처 대상 전면 실시(계속 과제)

① 과제 내용

-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② 추진배경 · 주요 내용 · 세부 실천방안

- 임금체불은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로 인해 2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

* '14.11월말 현재, 체불액은 1조 2,065억원(266천명)

⇒ 이에,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대책」 발표 ('14.2.11) 후 관계법령 개정 추진

-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내의 부가금 지급

-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 부여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심사가 완료되어 법제처심사 요청 예정, '15.1월 국회 제출 및 내년도 상반기 국회 통과 추진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 시행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 · 현금지원제도 개선

① 과제 내용

-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

② 추진배경

- 현재 외투기업에 대해 운영 중인 현금지원제도는 그 평가 항목이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규정
 - * “낙후지역 입지”, “기술이전 효과” 항목에서 서비스업은 특성상 미흡한 평가
 - 서비스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편 필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구분	세부사항
지원기준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대상	1) 고도기술수반, 산업지원서비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부품소재 2) 연구인력 5명 이상 상시고용 R&D 분야 3)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 4)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큰 투자(지역본부, 지역전략 선도산업)
용도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장비구입비, 교육훈련보조금 등
평가항목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낙후지역 입지,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지원금액	협상을 거쳐 FDI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최대 30%, R&D는 최대 40%)

- 입지지원 방식 또한 국가·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외투 기업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업에 불리한 구조
 -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에 대한 매입 또는 임대료 지원을 입지지원 방식에 추가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15.上)



U턴기업 인센티브 확대

1] 과제 내용

-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요원 배치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2] 주요 내용

- 초기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E-7) 발급 비율 및 한도를 고용규모와 무관하게 확대

* 유턴 애로사항('14.1월, KOTRA): ①투자보조금, ②인력, ③입지 등

현행			개선안		
내국 고용인원(신규)	비율	한도	내국 고용인원(신규)	비율	한도
100명 이하	10%	10명	100명 이하	10%	30명
101명~299명	7%	20명	101명~299명		
300명 이상	5%	30명	300명 이상		

- 유턴기업이 쉽게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 업체 평가시 유턴기업에 가산점 항목 신설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특정 활동 자격 해당자에 대한 사증발급 인증서 발급 및 체류 관리통합지침' 개정(법무부, '15.3월)
- '산업기능요원제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지침' 개정(중기청, '15.3월)



FTA 조기비준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1] 과제 내용

- 한-중·한-베·한-뉴 FTA 효과 조기가시화를 위해 민관TF를 구성, 산업별 전략, 국내보완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기비준 추진
 - * 농수축산업·영세산업(섬유 등)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진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 등
- 컨설팅 등 원산지 증명 지원 강화 및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섬유→농축수산물)하고 FTA China Desk(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2]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 발효 前 수출·투자 확대, 서비스진출 지원 등 산업별 대응 전략 및 보완대책 등 종합대책 수립('15.6월)
 - ① (수출확대) 산업별 유망품목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FTA활용 China Desk' 설치('15.3월) 등 ONE-STOP 지원
 - 한-중 FTA 등에 대비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14.11월 개발)의 보급 확산 및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15.1월~)
 - FTA 포털(fta.go.kr, fta1380.or.kr) 등을 통해 FTA 정보 제공 강화, 통관애로·비관세 장벽 등 손톱 밑 가시 과제 발굴·해소
 - ② (투자유치) 체결국·주변국의 생산기지, R&D 센터 등 유치 활성화
 - ③ (서비스 시장 진출) 건설, 유통, 법률, 엔터테인먼트, 환경 서비스 등 한·중 FTA를 통해 개방된 中 서비스시장 진출 지원
 - ④ (국내보완대책) 농어업, 영세제조업(섬유 등) 등의 체질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한-중·한-베·한-뉴 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정식서명, 영향 평가, 국내보완대책 등을 신속히 준비하여 국회상정 추진

온라인을 통한 逆직구 촉진

① 과제 내용

-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지원 확대, Active-X 없는 결제환경 조성,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을 통한 逆직구 촉진

② 주요 내용

-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B2C, B2B) 등록 지원
 - * (B2C) 타오바오 등 온라인 쇼핑몰 (B2B)고비즈코리아 중국관 등
- (Active-X 없는 결제환경) Active-X 폐지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불편 해소
 - 해외소비자를 위한 쇼핑몰 K-mall 구축('14.6월),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개발(8월), 보급(9~12월)
 - * BC, KB국민, 우리카드(적용완료), 롯데, 삼성, 신한, 하나SK카드(보안업체와 계약완료하여 연내적용), 현대, NH농협카드(최종 결정 中으로 연내적용)
-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농식품 對中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 전용관을 2개소 추가 확대
 - * ('13) 1개소 → ('14) 2개소 → ('15^e) 4개소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상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
 - * ('15.1/4)지원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
(2/4~) 상품페이지 제작, 쇼핑몰 등록 지원(B2C 300개사, B2B 300개사)
- 중국 온라인몰과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 협의('15.上)

신흥국 경협로드맵 마련 및 EDCF 활용도 제고

1] 과제내용

- 다양한 경협채널 연계·확대를 위한 신흥국 경협 로드맵을 마련('15.上)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도를 제고
 -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EDCF와 다양한 민간재원을 결합·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공

2] 주요내용

- (로드맵) 신흥국 경협수요, 우리측 비교우위 등을 종합 고려, 중점협력국 및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복합형 경협모델 구축
- (민간재원 결합) 이차보전,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EDCF와 민간재원을 결합하여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 촉진
 - 수은이 자체조달한 민간재원이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EDCF를 통해 이차(利差)보전 지원
 - 개도국 인프라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EDCF 보증 제공, 펀드 출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
- (중소기업 우대) ODA 사업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민간협력차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등
 - * 고용창출 등 민간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용자제도를 신설, '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예정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신흥국 경협로드맵 마련('15.上) 및 권역별 경제협력전략 수립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금운용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15.下)
- 민간협력차관 시범사업 실시('15.上)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① 과제 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25.5→26.5조원) 확대

② 주요 내용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14년보다 1조원 확대('15년 26.5조원)
 - (금리우대) 수출 초보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대기업과 동반 진출 기업 등에 대해 금리 우대 실시
 - * 금리 최대 $\Delta 0.5\%p$ 인하
 - (비금융 서비스) 경영컨설팅, 성장전략 코칭, 인재교육, 환위험 관리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수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원효과 내실화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략 수립 ('15.2월)
- 금리우대, 금융컨설팅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실시

① 과제 내용

-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12개법령 1,200여개) 합리적 재정비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출품목을 점검·再조정**

* 수출시 필요한 구비요건에 대해 세관장이 확인하는 제도(관세법 §226)

**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국제협약 실천지원, 사회적 요청 등을 종합 검토

② 추진배경 및 세부 실천방안

- (추진 배경) 사회적 이슈 등에 대응하고, 우리 수출물품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재정비 추진
- (세부 실천방안) 세관장확인대상 제도 전반을 점검하되, 특히 양곡, 종자 등에 중점
 - i) 쌀 관세화에 따라 양곡관리법상 확인대상 품목 제외
 - ii) 국내 토종 종자 보호를 위한 종자 수출확인 품목 확대

* 현행 인삼종자 외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내종자에 대한 요건확인대상 확대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개정 고시('15.6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추가 대책 수립

① 과제 내용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확대와 지역·공종별 편중완화, 해양 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분야 진출을 위한 추가대책 수립(15.上)

② 추진배경

- 글로벌 인프라·플랜트 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
 - 프로젝트 대형화와 함께 시공자 금융·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전환추세가 가속화되어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수주의 관건
- 수주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을 마련(13.8)·추진중이나,
 - 중동·아시아지역, 플랜트, 단순도급사업 등에 대한 수주구조 편중현상*은 지속
- * (지역별, '14.3/4분기) 중동 54%, 아시아 22%, 아프리카·중남미 17% (공종별, '14.3/4분기) 플랜트 80.6%, 토목 7.9%, 건축 7.2%
- 또한 해양플랜트 설치·해체·개조 등 수반되는 연관서비스, 유지관리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은 미흡한 상황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수주확대를 위해 수은 추가출자·무보 추가 출연 추진
- 건설·플랜트 수주 지역·공종·유형 다변화 방안 마련(15.上)
-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선도사업 육성 및 기술개발 추진(15.上)



KIC 자산위탁 기관 확대

① 과제 내용

- 해외자산운용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 위탁기관 확대
 - * (현행) 정부(외평기금)와 한은만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

② 추진배경과 추진방향

<추진배경>

-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 증권투자 등의 활성화가 필요
 - 이에 따라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KIC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추진방향>

- 우선, KIC 자체적으로 신규 위탁기관 발굴 노력을 강화
 - 국내 연기금,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해외투자 관련 신규 위탁자산 유치를 위해 협력채널* 활성화
 - * (예)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등 공공기관간 해외투자 정보·노하우 공유를 위한 협의체
 - 위탁기관별 운용자산 성격 등을 감안한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이와 함께 KIC에 자산위탁 가능한 기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한국투자공사법 개정도 추진
 - (현행) 정부, 한은, 기금관리주체 → (개선) 공공기관, 공제회* 추가 (例 : 경찰·군인·지방행정 공제회 등)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KIC 신규 위탁기관 발굴 노력 강화 (연중)
-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마련 (정기국회 제출)



국가 · 공공기관 발주시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 조정

① 과제 내용

-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해외사례, 기업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여 국가계약법령상 적정요율 도출

② 추진배경

- 국가계약법령에서 제조업-서비스업 간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을 원가구조*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규정
* 제조업은 생산시설·기계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투입, 서비스업은 인력 중심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물품 (제조업)	용역 (서비스업)
일반관리비 지급률	최대 6~14% * (예시) 제1차 금속제품: 6%, 음·식료품: 14%	최대 5%
이윤허용률	최대 25% (수입물품은 10%)	최대 10% (소프트웨어개발은 25%)

- '95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산업환경·원가구조 등이 변화된 점을 고려시 합리적 조정 필요성 제기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기업환경 변화, 해외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일반관리비율, 이윤허용률 등 국가계약법령상 요율 적정성 검토
- 검토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 후 국가계약법령 개정 추진 ('15.上)

① 과제 내용

- 기 마련한 5+2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14.8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 마련 ('15.上)

② 추진배경

- 국가간 서비스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서비스산업은 종전 내수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시장으로 변화중
 - * 세계 서비스수출액(조달러, WTO): (95)1.3 → (00)1.6 → (05)2.5 → (10)3.8 → (13)4.6
-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부문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하여 매년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
 - * 서비스수지적자(억달러, 한은): (95)47.6 → (00)9.7 → (05)91.3 → (10)142.4 → (13)65.0
- 그러나 최근 서울대 병원의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 해외 관광객 증가 등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해외진출(Out-bound) 및 외국인 수요의 국내유치(In-bound) 성과 달성
 - * 해외환자 유치실적(실환자 기준, 만명): ('09)6.0 ('10)8.2 ('11)12.2 ('12)15.9 ('13)21.1
 - * 해외관광객 유치(만명) : ('09)782 ('10)880 ('11)979 ('12)1,114 ('13)1,216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시장 파이를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 관련 연구용역,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 중점 검토분야 및 개선과제 발굴
- 유망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 마련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

1] 과제 내용

-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지역별공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추진('14.10.10 경제장관회의 발표)

* 전국 외국인관광객 추이(만명, 문체부) : ('11) 979 → ('12) 1,114 → ('13) 1,218

- 관세법령상 특허비율*, 현행 추가 특허요건**과 함께 면세점 이용 혼잡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 (대기업) 60% 미만(現 19개 45.2%), (중소중견) 20% 이상(現 16개 38.4%, '18년까지 30%)

** 직전연도 대비 외국인관광객 30만명이상 증가, 외국인 이용자 및 매출이 50%이상

2] 추진배경

- 최근 국내 면세산업*은 한류열풍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높은 성장세**와 함께 세계 면세시장 점유율 1위 기록

* 국내 면세점 현황 : 41개(시내 16, 공항만 19, 제주 지정면세점 5, 외교관면세점 1)

** 국내 면세점 매출(조원) : ('01) 1.78 → ('05) 2.24 → ('11) 5.37 → ('13) 6.83 → ('14.10) 7.56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비해 서울의 경우 '00년 이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없는 등 면세점 혼잡이 심각*한 상황으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필요

* 제주도의 경우 크루즈 선박 입항시 수십대의 관광버스로 인해 면세점 앞 도로가 마비, 서울의 경우에도 물건 값 계산을 위해 30분이상 기다려야할 정도로 혼잡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15년초)

① 과제 내용

- 펀드·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 마련

② 세부 실천방안

- (도입방안) 연금·펀드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 자문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수준으로 제한
 - 자문업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문 가능하도록 판매채널과의 독립성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

* (예) 취급상품의 독립성(whole of market), 경제적 이익의 독립성 등

- (활성화방안)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및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상품자문업 제도 활성화

*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채널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자문료 수취여력 확보 가능

**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금융상품자문업 세부 도입방안 및 활성화방안 마련 : '15.상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1] 과제 내용

-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15년 상반기)

2] 추진배경

- 사업서비스는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큼
 - 디자인, 광고 등 제조업 제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해당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그러나 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여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
 - * 사업서비스수지(억달러): ('10)△122.1 ('11)△121.8 ('12)△127.7 ('13)△115.0
- 창업·R&D·해외시장 수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사업서비스 분야별 소관부처와 합동으로 정책 방향, 중점 검토분야 논의 및 개선과제 발굴

사업서비스 분야별 소관부처(예)

분 야	디자인·컨설팅	광 고	부동산	지식재산
소관 부처	산업부	미래부·방통위 등	국토부	특허청

- 사업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공급 허용

① 과제 내용

-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우선·일괄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② 주요 내용

- 리츠·펀드·20호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중이나,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용 우선공급 주택에서 제외
- 리츠·펀드·20호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도시형 생활주택 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선공급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검토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시행(3월)

① 과제 내용

- (보증제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영업의무사항인 보증보험제도 개선

*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공실·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업종

- (표준계약서) 유지보수·하자관리 부담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표준위탁 계약서 명확화

② 주요 내용

- (보증제도) 보증보험료율 인하 및 보증상품 다양화
 - 높은 보증보험료율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보증보험료율 인하 및 상품 다양화 추진
- (표준계약서)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유지보수,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 관련 표준 계약서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관리업 정착 유도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보증제도) 보증보험 상품다양화 등 개선(대주보, 3월)
-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배포(2월)

1] 과제 내용

- (상장요건) 코스피 상장규정을 리츠 특성에 맞게 개정
- (출자한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비율 규제(현행 40%) 완화

2] 주요 내용

- (상장요건)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는 매출액(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기준(현재 300억원 이상) 하향 조정
 - * 리츠는 상장을 전제로 도입되었지만, 상장리츠가 거의 없음
(리츠 96개 중에 상장된 리츠는 7개에 불과, '14.11월말 기준)
- (출자한도) 임대주택에 70% 투자(연면적 기준)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 면제 추진 중
 - * 현재 의원입법(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의원)으로 국토위 소위 계류중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상장요건) 금융위 · 거래소와 협의하여 개정안 도출(1월)
- (출자한도) 법령개정안 국회심의 중 →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3. 리스크 관리

1] 과제 내용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의무상환비율을 일률적 적용*에서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차등 적용

* (현행) 일정 기준소득('14년 1,856만원) 초과분의 20% 일률적 적용 →
(변경: 예시) <기준소득 150%이하> 15% <150~200%> 20% <250%이상> 25%

2] 추진배경

- 상환부담액을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상환부담 실현
 - ICL 상환액 산정시 상환비율의 일률적 적용은 취업 초기 또는 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가중
- ICL 제도의 재정 건전성 조기 확보
 - 고소득자의 의무상환비율 증가는 ICL 상환기간 단축 및 상환 촉진을 통한 ICL제도의 재정안정성에 기여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관련법령(「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15년 하반기)
 - * 상환기준 소득 및 의무상환율 차등 시뮬레이션(정책연구) 및 관계부처(국세청, 기획재정부) 협의('15년 상반기)
- ICL 상환시스템 구축(국세청, '16.上) 및 시행('16년 7월~)

① 과제 내용

-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 추진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안정적 구조조정 필요

② 추진배경·주요 내용·세부 실천방안

- 현행 기촉법은 '15.12월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16년 이후 실효 예정
 - 기촉법 부재시, 시장기능에 의한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이를 위해, 현행 기촉법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방안 등을 강구
 - 기촉법의 효율성·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해 대상채권 및 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등 추진
 - * (대상채권) 금융기관 채권→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 (대상기업)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모든 기업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현행 기촉법의 효력 만료 시점('15.12월)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 확보
 - 구체적인 추진방식 등은 국회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



과세특례 적용 자산의 적격 포괄양도 요건 완화

① 과제 내용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인수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비율을 95% 이상에서 80%로 완화

② 주요 내용

-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등 특례의 적용요건을 완화
 -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인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가 중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가액 비율을 95%에서 80%로 인하*

* 현금 등을 20%(미만)까지 수취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의 포괄양도 요건>

- ① 자산의 포괄적인 양도(총자산 70%, 순자산 90%이상)
- ② 사업영위기업 간 양수도(1년 이상 계속 사업)
- ③ 지분연속(인수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 95%이상, 지배주주 지분율 유지 등)
- ④ 사업계속(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 ⑤ 자산 양도법인 청산(6개월 이내)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조세특례제한법(§37) 개정('15년말)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

① 과제내용

- 기업이 新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② 추진배경

- 유로·中·日 경제둔화, 엔저 심화, 신흥국 추격 등으로 제조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집중

*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 (‘10)18.5 → (‘11)13.6 → (‘12)4.2 → (‘13)0.5

- 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

※ (일본사례) 산업활력법을 제정(‘99)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기업 수익성 개선, 경제의 성장궤도 진입에 기여(일본 경제산업성 평가)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지원대상, 요건,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15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14.12~15.4) 및 민관합동 TF를 통해 마련할 계획

* 지원대상 기업 선정기준,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지원승인과 연계할 세부 요건, 정부내 승인절차 등



新외환전산망 구축

① 과제 내용

-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한 新외환전산망을 구축·운영

② 주요내용

-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분석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외환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외환전산망 구축을 추진

<현행 외환전산망 흐름도>



- (추진방향) 새로운 콘텐츠 개발, 외환정보 이용의 편의성 제고, 금융기관의 보고업무 및 시스템 관리업무의 고도화 추진 등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은행 등 전산망 이용자의 사전 테스트 등을 거쳐 '15년 1월중 개통 예정

① 과제 내용

-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점검·개선

② 주요 내용

- 美 양적완화 종료, 최근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우리경제는 안정적 자본유입 흐름이 지속
- 다만, 내년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변화하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특히 신흥국 전반으로 시장불안이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발생 가능성도 존재
 -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9월~12월간 유출된 총 695억불 중 단기차입 495억불, 주식 74억불, 채권 134억불
- 이에 대비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 마련
 -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 확충
 - * 바젤 III상 권고사항인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 예상 순현금 유출액 대비 高유동성 자산 비율)
 -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들*중 규제의 목적·효과가 중첩되는 제도를 정비·개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 * 외화유동성비율·갭비율 증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안전자산보유비율 등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존 제도의 효과, 규제준수 부담 등을 검토하여 개편방안 마련('15.1/4분기중)
-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15.2/4분기중)

1] 과제 내용

-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2] 주요 내용

- 현재 외화차입 유인 완화 및 장기차입 유도를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

* 부과율: (1년 이하) 20bp,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 다만, 여전사·증권사 등 여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되는 측면

- 이러한 문제점 개선 및 대외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관을 여전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 '11년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도입당시 부과대상을 최초 은행권에서 이후 여타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 부담금 부과율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요율체계 개편 추진

3]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15.1/4분기중)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 관련법규 개정·여전사 등에 대한 부과금 부과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15.2/4분기중)

선물환포지션 한도조정 및 장기 채권자금 유인 강화

① 과제 내용

-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

② 주요 내용

- 내년이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외국인 자본유출이 확대될 경우, 기존 자본유입 완화 장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 차입 능력·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인해 추가 자금조달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도 조정방안 강구
 - 현행 외국인 채권투자과 관련한 제도 등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검토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15.1/4분기중)
- 향후 외국인 자본유출입 흐름 변화와 연계하여 제도시행 검토(지속 추진 과제)

4. 통일시대 대비

① 과제 내용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
 - '15년 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추진

② 주요 내용

-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임하는 '15년 서울 총회(11월)에서 GTI 국제기구 승격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
- 에너지, 교통·물류, 농업 분야의 핵심 경협사업 발굴·추진
 - GTI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경협사업 발굴 및 연구를 진행하고,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 등을 통해 투자·개발 사업으로 연계 추진

** GTI 역내 양자·다자간 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회원국 수출입은행간 협의체 출범('14.9월 총회)

③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 GTI 조정관 회의 개최('15.2월,9월): 국제기구 설립 관련 쟁점 협의
- 제16차 GTI 총회 개최('15.11월): 국제기구 설립 협정문 승인

참 고

GTI 개요

- 명칭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 성격 : 동북아 경제개발·협력을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약체
 - *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국제사회 제재 등에 반발하여 '09.11월 탈퇴
- 연혁 : '92년 UNDP 지원하에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범
 - * 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05.9월 대상지역 확대·공동기금 설립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확대

두만강개발계획(TRADP)	광역두만강계획(GTI)
<p>(중국)연길 (북한)청진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지역</p>	<p>(중국) 동북3성,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북한) 나진·선봉 등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일부 (한국) 동해안지역(부산, 울산, 속초, 동해, 인천, 제주 등)</p>

- 의사결정 : 차관급 연례협의체*에서 주요 전략 및 정책방향 결정, 국장급 조정관회의와 6개 분야별 위원회**에서 실행
 - * 연례협의체: 한국·몽골은 재정부, 중국은 상무부, 러시아는 경제개발부가 참여, 의장국은 1년마다 돌아가며 수임(금년 의장국: 중국→15년 의장국: 한국)
 - ** 교통, 에너지, 관광, 무역원활화, 환경, 지자체 위원회
- 사무국 : 북경 소재